성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(개정 2017. 3.21. 시행 2017.9.2.)에서 위임하고 있는 읍·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민·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, 지역 내 복지대상자 발굴 활동을 촉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상위법령 근거 조항 수정(안 제1조)

○ 읍·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(안 제5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
-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규제심사 : 해당 없음 [기획감사실-7473('17 .8.17.)]

라. 성별영향평가분석 : 개선사항 없음

마. 입법예고 : 의견 없음 (예고기간 : '17. 9. 7. ~ '17. 9.27.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『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법률』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『성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』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
○ 주요 개정내용은 읍·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지역사회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○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읍·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·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자 함에 있어 본 조례를 일부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